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 5. 30 선고 2017가단120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8나52546 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 5. 30 선고 2017가단12085 판결

전 문

원고A종교단체 B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규수

피고1. C

2. 재단법인 D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래춘

3. E

4. F

5. G

6. H

변론 종결2018. 5. 9.

판결 선고2018. 5. 3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C은 피고 재단법인 D(이하 '피고 유지재단'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7. 9. 21. 접수 제89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유지재단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7. 8. 9. 접수 제743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유지재단은 피고 E, F, G, H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91. 2. 20. 접수 제11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E, F, G, H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91. 1.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유지재단은 A종교단체 교단과 산하 지교회 등을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관리하여 필요한 자산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유지재단은 1991. 2. 20. 1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1. 1.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8.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2017. 7. 27. 피고 유지재단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6,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7. 9.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I은 1994. 8. 15. 사망하였고, 피고 E, F, G, H는 I의 자녀들로서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유지재단에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 유지재단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적법한 권한 없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 C, 유지재단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그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I의 상속인인 피고 E, F, G, H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 1.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유지재단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적격이 없다는 주장

위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 당시에 존재하던 A종교단체 J교회(이하 원고와 구별하여 'J교회'라 한다)와 원고는 서로 다른 별개의 교회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본안심리의 대상이 되는 이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주장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대표권 흠결 주장

위 피고들은, K이 A종교단체 교단에서 면직처분되었으므로, K에게 원고를 대표할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을 11,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K이 2017. 3. 13. A종교단체 교단에서 면직처분을 받고, 2018. 1. 8. 파직 및 출교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갑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7. 10. 29. 임시총회를 열어 전체 교인 24인의 만장일치로 A종교단체 교단에서 탈퇴하고, K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총회 결의 흠결 주장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원고 교인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 혹은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므로,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교인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송요건의 유무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갑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8. 3. 11.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유지재단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위 피고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혹은 J교회가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J교회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을 1, 2, 4, 5, 6, 7, 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적법하게 A종교단체 L지방회(이하 '이 사건 지방회'라 한다)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이 사건 지방회 소속 J교회가 설립되었는데, 위 교회는 1991년경 목회자와 교인들이 없어져서 해산되었다(원고는 청산절차가 남아 있어 법적인 권리능력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교회 재산의 귀속절차 이외에 다른 사무가 남아 있었다고 불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A종교단체 교단 헌법 제78조 제11항은 파산(폐쇄)된 교회의 재산은 지방회에서 개척교회의 설립 및 미자립교회 지원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같은 조 제12항은 목회자의 가족 및 친인척을 제외하고 10명 이하의 교인만 남아 있는 교회의 재산권은 지방회의 결의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③ J교회가 사용하던 부지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강원 정선군 M 전 127m², 같은 N 답 3,098m²가 있었는데, 위 M 토지에 관하여 1994. 2. 22. O,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N 토지에 관하여 1991. 3. 9. Q 명의의, 2005. 1. 21. O,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④ 피고 유지재단, O, P은 2005. 2. 18. ㉠ 위 M, N 토지는 J교회의 교인이 증여한 재산으로 피고 유지재단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나, ㉡ 관련 법령에 의하여 농지를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농지 취득자격이 있는 O, P의 명의로 등기하되, ㉢ 훗날 피고 유지재단에 증여할 것이며, ㉣ 이에 따른 각종 비용과 세금은 이 사건 지방회가 부담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⑤ 이 사건 지방회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M, N 토지와 관련한 공과금, 재산세 등을 납부해 왔다.

⑥ 이 사건 지방회는 2010. 5.경부터 J교회 복원추진위원회(이후 J교회 관리 및 운영위원회로 전환되었다)를 두어 J교회의 복원을 추진하였는데, 위 위원회에는 피고 교회의 대표자인 피고 K도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⑦ 이 사건 지방회는 J교회의 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J교회의 기본재산으로 규정하는 'J교회 운영 관리위원회' 정관을 작성하려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지방회의 기본재산으로 하는 'L지방회 자산관리위원회' 정관을 작성하게 되었다.

⑧ J교회 관리 및 운영위원회는 2013. 1. 15.경 위 M, N 토지를 O, P 공동 명의에서 O 단독 명의로 이전한 후, 위 부동산을 매각하여 이 사건 지방회 자산으로 귀속시키기로 결의하였고, 피고 K도 위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 결의에 참여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주은영

별지